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15인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신용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

발 의 자: 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  
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  
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  
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16인)

## 1. 제안이유

구미시의 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예방사업(안 제5조)
- 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안 제6조)
- 마.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안 제7조)
- 바. 마약류 명예지도원(안 제8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1조의2, 제51조의5, 제51조의6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0조의6
-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나. 부서검토: 보건행정과 의견제출(붙임)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에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보건소, 교육

청, 보건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예방 계획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사항
3. 예방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개선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사업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

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 9. (생 약)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상담

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⑤ (생략)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보건행정과

조 례 명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b>□ 검토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1조의2, 제51조의5, 제51조의6</li><l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0조의6</li><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일 2024.7.3.)</li></ul></li></ul>	
<b>□ 주요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li><li>○ 시장의 책무(안 제3조)</li><li>○ 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li><li>○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 사항(안 제5조)</li><li>○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사업 관련 사항(안 제6조) ※식품위생과 소관</li><li>○ 마약퇴치의 날 관련 사항(안 7조)</li><li>○ 마약류 명예지도원 관련 사항(안 8조)</li></ul>	
<b>□ 검토 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근 증가하는 불법마약류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에 이견 없으며,</li><li>○ 조례안 제정과 함께 마약없는 구미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li></ul>	
<b>□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마약류 위험성 인지와 경각심 환기</li><li>○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li><li>○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li></ul>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예방사업(안 제5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안 제6조)
- 마약퇴치의 날(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 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

- 안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에 비용이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김민수(☎054-480-4023)